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완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6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06.

발 의 자 : 박완수·이종성·김태호
박진·추경호·양금희
하영제·최춘식·김은혜
박대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건축물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어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입주자 등에 의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의 변경사항 등이 있고,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·관리업무의 단절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임.

또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후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에 따라 시정되는 현행법 체계가 소화펌프 등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임.

이에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점검 중 발생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토록 하며 점검결과보고 시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

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, 제25조의2, 제48조의2 및 제53조제2항)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대하여 정기적으로”를 “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”로, “기술자격자”를 “기술자격자(이하 “관리업자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”를 “관리업자등으로”로 한다.

1.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: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
2. 제1호 외의 경우 :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

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,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의 조치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업자등은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제1항에 따른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·교체·정비에 대한 이행계획(제1항에 따른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)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고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완료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 관계인이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,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8조의2제1호 중 “제20조제13항”을 “제20조제13항, 제25조의2제5항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2항제10호 중 “제25조제2항”을 “제25조의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시설등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<u>대하여 정기적으로</u> 자체점검을 하거나 <u>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<u>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5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대하여 다음</u> <u>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</u>----- ----- -----<u>기술자격자(이하 “관리업자등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: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</u></p> <p>2. <u>제1호 외의 경우 :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(제1항에 따른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)을
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
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
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
다.

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
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
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
에 완료하고, 소방본부장 또는
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
서장은 이행완료 결과가 거짓
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
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
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
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 관계인이 제4항 전단에 따
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
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
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
할 수 있고, 관계인은 이에 따

제25조의2(우수 소방대상물 관계
인에 대한 포상 등) (생략)

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
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5조제1항·제2항, 제9조제
2항, 제10조제2항, 제10조의2
제3항, 제12조제2항, 제20조
제12항, 제20조제13항, 제36
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
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
유 없이 위반한 자

2. ~ 7. (생략)

제53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9. (생략)

10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
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
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
로 보고한 자

11. ~ 13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라야 한다.

제25조의3(우수 소방대상물 관계
인에 대한 포상 등) (현행 제25
조의2와 같음)

제48조의2(벌칙)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제20조제13항, 제25
조의2제5항,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제25조의제3항-----

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